

# 언론인 청탁금지법 ‘이럴 땐 위반’ 8개 예외 아니면 거의 모든 금품요구·수수는 위법

글 양재규 | 언론법 전문 변호사  
eselltree92@gmail.com



광고주가 직접 물어보고 법적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보는 Law119

양재규 언론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광고, 홍보, 마케팅 등 기업 업무 전반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자.

대등한 관계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일도 권력 관계 하에서 일어나면 문제일 수 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들이 많다. 흔히 ‘갑을 관계’라 부르는,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와 기업 홍보담당자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



**Q** 홍보담당자로서 기자들을 상대하면서 선 넘는 상황들을 여러번 목격했다.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갑질이 많다. 한 언론사 국장은 해당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기업체 홍보담당자들에게 자녀 청첩장을 돌리더라. 홍보담당자와의 업무미팅을 부서 회식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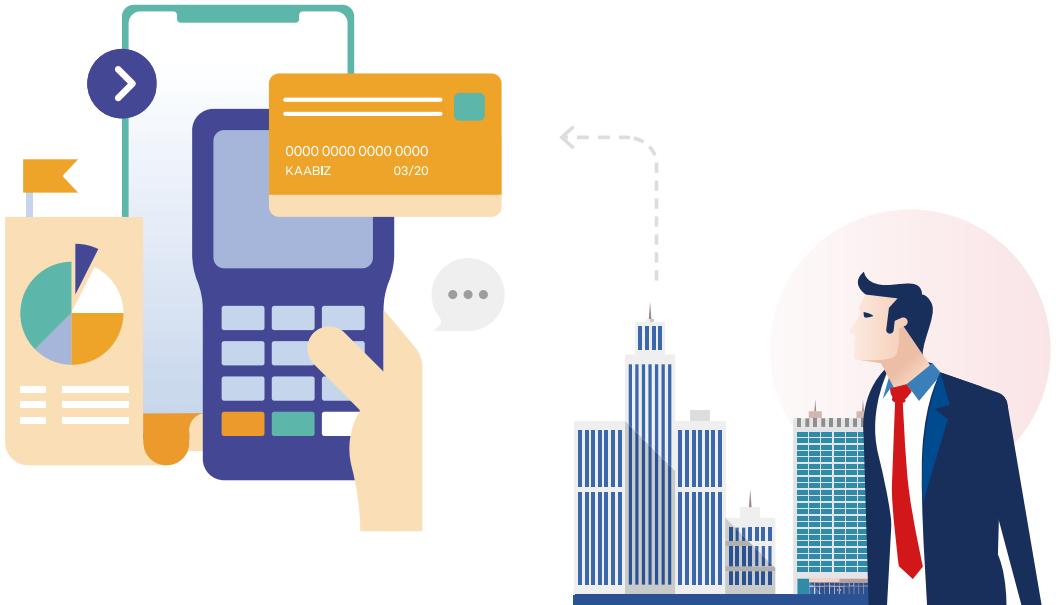
**A** 2023. 2. 20.자 <반론보도닷컴> 기사(“사이비 언론행위 일삼는 매체와 언론인 제보받습니다”)를 보니 홍보담당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들의 갑질 행태가 여전하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다. 오죽했으면 광고주협회 차원에서 ‘사이비언론신고센터 3.0’을 열었겠나 싶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자들의 갑질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먼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문 같은 것이었다.

기자들의 선 넘는 행위는 대체로 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협박, 다시 말해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협박죄 내지는 강요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등 형법의 문제가 될 것이다. 협박한 것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논의의 구체성을 위해 홍보담당자들이 주로 직면하는 상황을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살펴보자 한다.

1유형은 일종의 ‘대납’ 요구, 즉 단골 술집에 홍보담당자를 불러 밀린 외상값을 계산하게 하거나 숙박시설 이용 후 대금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다. 그런데 언

론인은 대가성 유무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직무관련자가 주는 금품을 받아서도 안 된다(법 제8조 제2항). 여기서 말하는 ‘금품’은 현금은 물론이고 각종 물품·유가증권·숙박권·입장권·관람권 등의 재산적 이익을 의미하며, 이외에도 음식물이나 주류를 포함한 일체의 향응, 교통·숙박, 채무면제가 다 포함된다(법 제2조 제3호). 외상값을 계산하게 했다면 그 액수만큼의 돈을 받은 것이고 공짜 술을 먹었으면 역시 그 액수만큼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다. 구체적인 행태를 불문하고 모두 다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면 된다.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이고 대가성이 없어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았으니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또 실제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금품 제공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법 위반이다(법 제8조 제2항).





2유형은 업무미팅을 빙자해 사실상 언론사 회식을 진행하는 경우다. 이 경우도 결국 식사비를 기업이 부담했을 것이므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금품 수수금지 위반일 수 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에서는 언론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수 있는 8가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2유형과 관련 있는 예외사유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 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등의 목적으로 인당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으니 정말 업무미팅 목적의 식사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업무미팅을 빙자해 언론사 단체회식을 진행했다면 이미 업무미팅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역시 원칙으로 돌아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것이 된다.

3유형은 기념품, 홍보용품과 같은 각종 물품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다. 이 경우 역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이 두 개다.

-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이들 예외사유가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살펴보면, 기자가 기업체로부터 합법적으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우선 행사 주최 측이 참석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물품은 받아도 된다. 그런데 ‘통상적인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행사의 취지나 성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가여서는 곤란하다. 굳이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이라는 제한을 걸어둔 것은 공식 행사가 합법적인 로비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된 기념품, 홍보용품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언론사의 기념품 협찬 요구를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是很 어렵다. 그런데 홍보물품 제공 요구가 1회성을 넘어 반복적으로

	사례	유형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A편집국장	성수기 콘도 청탁 및 이용 후 요금 지불 거절	1유형	위반
B편집인	고급 식당(호텔 등)에서 홍보담당자 점심 약속, 약속시간 몇십분 전에 취소 → “먹은셈 치고 선지급해두라”고 요구 후 주말 등에 가족과 이용	1유형	위반
C국장	소속 언론사 행사에서 참석한 기업 홍보담당자들에게 본인 자녀 청첩장 전달 → 기자들에게도 출입처에 청첩장 전달 강요	4유형	위반 아님
D국장	홍보담당자와의 업무미팅을 소속 언론사 회식자리로 이용 → 비용은 기업에서 처리	3유형	위반 가능성 높음
E기자	단골 술집에 홍보담당자 호출, 밀린 외상값 처리 요구	1유형	위반
F기자	기업이 홍보 차원에서 최초 제공한 제품을 정기적으로 요구	3유형	위반
G국장	기업과의 골프 행사에서 물품(골프채, 의복 등) 요구	3유형	위반

이루어지거나 심지어 정기적 제공을 요구한다면 상식적으로도 이미 선을 넘은 것이다.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순간, 역시 금지된 물품 수수가 된다. 마지막으로 4유형이다.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홍보담당자들에게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는 임원, 자기 위신이 서도록 광고 추가 집행을 요청하는 언론사 간부 등의 경우다. 사실 이런 경우는 대등한 관계에서라면 전혀 문제 될 일이 아니다. 안 가고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홍보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쿨하게 행동하기 어렵다. 그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러한 행위만 가지고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첩장 전달을 곧장 금품 요구로 직결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조 목적의 경조사비는 8가지 예외 중 하나로서 수수가 허용된 금품이기도 하다. 광고의 경우에도 요구한 것만 가지고 바로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모를까, 일종의 영업 행위의 일환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끝으로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하나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 법에 따르면 돈을 받

은 사람도 문제지만 돈을 준 사람이 더 큰 문제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8조 제5항). 앞에서 열거한 세 가지 유형의 금품수수가 문제라면 돈을 받는쪽은 ‘받은 돈의 2배 내지 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돈을 준 쪽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된다. 그러나 홍보담당자로서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일단 형사처벌의 위험과 헤어질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③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의실장을 맡고 있는 양재규 변호사는 풍부한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보도, 인격권 분야에서 언론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광고, 홍보, 마케팅 등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soziro01@kaa.or.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주제를 선정, [Law119]에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